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41호 2023. 12. 7.(수)



| | |
|---|-------|
| 선 | 기관의 장 |
| 결 | |

공 고

| | |
|--------------------|---|
| 거창군 공고 제2023-1802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 거창군 공고 제2023-1803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면 단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원 대비 초과정원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세종사무소 근무, 인구증가 업무, 창포원 국가정원, 산림레포츠 파크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신규·핵심 분야 인력을 증원하여 재배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 조정함(안 별표 4)
 - 1) 총정원: 변동없음
 - 2) 부단체장 직급 상향: 4급 감1, 3급 증1
 - 3) 기능인력 재배치, 현원 대비 초과정원 정비에 따른 정원 조정
 - 가) 본청: 6급 이하 증6
 - 나) 사업소: 6급 이하 증1
 - 다) 면: 6급 이하 감7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 | 사업소 | 읍 | 면 |
|-------------------|----------|--------|------------|----|------|------------|-----|----------|----|------------|
| | | | | | 소계 | 농업 기술센터 | 보건소 | | | |
| 총 계 | | 796 | 366 360 | 20 | 149 | 76 | 73 | 42 41 | 42 | 177 184 |
| 정무직 | | 1 | 1 | | | | | | | |
| 일반직 | 소계 | 759 | 360 354 | 20 | 119 | 46 | 73 | 41 40 | 42 | 177 184 |
| | 3급 | 1 0 | 1 0 | | | | | | | |
| | 4급 | 4 5 | 3 4 | | 1 | | 1 | | | |
| | 5급 | 39 | 15 | 3 | 6 | 4 | 2 | 3 | 1 | 11 |
| | 6급 이하 | 715 | 341 335 | 17 | 112 | 42 | 70 | 38 37 | 41 | 166 173 |
|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 | 1 | 1 | | | | | | | |
| 연구직 (연구사) | | 7 | 3 | | 3 | 3 | | 1 | | |
| 지도직 (지도사) | | 28 | 1 | | 27 | 27 | | |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인구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인구(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면 단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원 대비 초과정원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세종사무소 근무, 인구증가 업무, 창포원 국가정원, 산림레포츠 파크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신규·핵심 분야 인력을 증원하여 재배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 1) 본청: 증6
 - 가) 3급 부이사관 증1
 - 나) 4급 서기관 감1

- 다) 7급 행정 증2
- 라) 7급 행정 · 농업 · 녹지 증1
- 마) 8급 행정 · 시설 증1
- 바) 9급 행정 · 사회복지 증1
- 사) 9급 행정 · 농업 · 녹지 · 시설 증1
- 2) 사업소: 8급 공업 · 환경 · 시설 증1
- 3) 면: 감7
 - 가) 7급 행정 감1
 - 나) 7급 행정 · 농업 감2
 - 다) 8급 행정 감1
 - 라) 8급 행정 · 농업 · 녹지 감1
 - 마) 9급 행정 · 농업 감2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인구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인구(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